| 별첨 | 우리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안)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 - 187호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우리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 복지관)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 1. 채용개요

### 가. 채용계획

(단위: 명)

| 채용직위 | 직급 | 채용인원 |
|---|---|---|
| 팀 장 | 3급 | 1명 |
| 팀 원 | 4급 | 2명 |
| 팀 원 | 5급 | 2명 |
| 합 계 | | 5명 |

### 나. 직종별 채용인원

| 구분 | | 직종 | 채용인원 |
|---|---|---|---|
| 정규직 | 팀장 | 스포츠문화팀(3급) | 1명 |
| | 팀원 | 스포츠문화팀(4급) | 1명 |
| | | 심리치료사(4급) | 1명 |
| | | 일반직(5급) | 2명 |
| 합 계 | | | 5명 |

※ 심리치료사(4급), 일반직(5급)은 임용 후 기관장이 부서 배치

### 다. 팀별담당업무

| 구 분 | 주요업무 |
|---|---|
| 발달지원팀 | · 이용자 기능향상을 위한 개별치료(언어,심리,작업 등) 서비스<br>· 그룹치료(언어,심리,인지 등) 서비스<br>· 부모(보호자)상담 및 정보제공<br>· 부모(보호자) 교육 |
| 가족상담 지원팀 | · 복지관 이용 및 서비스 욕구 지원 상담<br>· 장애가족 및 비장애형제 프로그램<br>· 복지관 이용자 부모회 운영 및 지원<br>· PCP 기반 복지관 이용계획 수립 및 지원<br>·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사업<br>· 발달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 평생교육 지원팀 | ·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br>· 학령기 아동·청소년 직무개발 및 프로그램<br>· 성인발달장애인 낮 활동 프로그램 '(가칭)우리아카데미'운영 |
| 스포츠 문화팀 | · 장애아동·청소년 방과후 체육교실 운영<br>· 성인발달장애인 건강교실 운영<br>· 성인발달장애인 생활스포츠교실 운영<br>· 문화·예술·스포츠 동아리 운영<br>·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인 육성 및 지원<br>· 장애·비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운영 |
| 돌봄서비스 지원팀 | ·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거체험 등) 훈련 제공<br>·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br>·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

## 2.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ㅇ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지역 우수인재 보호·육성을 위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ㅇ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구분 | 결격사유 | 비고 |
|---|---|---|
| 우리복지관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 [참고1]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 [참고2]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참고3] |

【참고1】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참고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나. 직급별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ㅇ 다음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그 경력기간내에 직급별 추가자격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직급별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 직 급 | 자 격 기 준 |
|---|---|
| 3급<br>(팀장) | 1.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br>2.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br>4. 체육학과 졸업자 중 체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br>5.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 4급<br>(팀원) | 1.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br>2.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자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br>4. 체육학과 졸업자 중 체육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br>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 5급<br>(팀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 자격기준 중 그 밖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기준

☞ 그 밖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1차 서류전형 시험위원(적격여부 판단)에서 인정한 사람

- 직급별 추가 자격 요건

| 직급 | 추가 자격 요건 | | |
|---|---|---|---|
| 4급 | 팀원 | 심리치료사 | 1.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 분야[심리검사(지능검사, 사회성숙도) 및 평가] 경력 1년 이상<br>2. 심리치료 관련학과(심리학과,재활심리학과,심리치료학과 등) 전공자 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재활심리) 자격인증서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심리검사(지능검사, 사회성숙도) 및 평가] 경력 1년 이상 |
| 5급 | 팀원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및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자도 지원가능) |

###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 구 분 | 대 상 | 우대요건 | 가점 | 증빙서류 |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br>·「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br>·「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br>·「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br>·「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 | 면접 총점 5%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br>·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br>·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 동점자 우선 채용 | | 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②→③ 순으로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근무지: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우리복지관(제주시 소재)**

**나. 보수수준**

- 2023년 道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부가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보수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다. 수습기간 적용**

- 수습기간 6개월 적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확정

## 4.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 가. 시험단계: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시험

### 나. 채용절차

| 채용공고 | → | 지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 | 정보가림 입사지원서 접수 | | 자격요건확인 | | 인성검사 (채용예정인원 3배수) |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임용 |
|---|---|---|---|---|---|
| | 인성·역량 면접 (채용예정인원 1배수) | | 추가서류 안내 및 등록 | | 결격사유 없을 시 임용 |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5. 시험세부내용

###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ㅇ 공고기간: ‘23. 7. 25.(화) ~ ‘23. 8. 4.(금)
- ㅇ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등
- ㅇ 채용대상: 팀장(3급) 1명, 팀원(4급) 2명, 팀원(5급) 2명

2) 지원서 접수

- ㅇ 접수기간: ‘23. 7. 31.(월) ~ ‘23. 8. 4.(금) 17:00
- ㅇ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전자우편: jejupass1@jeju.pass.or.kr
- ㅇ 응시직위: 팀장(3급), 팀원(4급), 팀원(5급) 중 1개 직위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정보가림 채용방식으로 진행

## 나. 서류전형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ㅇ 서류전형일정: ‘23. 8. 7.(월) ~ 8. 9.(수)

2)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3) 합격자 결정

| 평가항목 | 합격자 결정 기준 | 비고 |
|---|---|---|
|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적격"인 자 | |

4)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대상자 통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8. 9.(수) 17:00 이후

ㅇ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제출서류 불성실자 불합격 처리>**

1.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공고상 제주사회서비스원 서류 양식이 아닌 경우
2. 자기소개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을 기재한 경우
3.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다. 필기시험

1) 일자 및 장소

ㅇ 일 자: ‘23. 8. 11.(금) 10:00

ㅇ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

2) 대상 및 출제방법

ㅇ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출제방법: 오프라인 인성검사 문제지(분석결과로 시험결과 확인)

3) 대상 및 출제방법

ㅇ 인성검사(※40분간 240문항 시험 실시)

■ 인성검사 신뢰도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정신건강 점수가 4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인성 평균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부정적 성향, 반사회성, 집단화 성향의 점수가 각 60점 미만인 자
■ 동점자 처리기준: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까지로 하며, 나머지는 절사)

- 위 조건을 만족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ㅇ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함(나머지 절사)

4)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통지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3. 8. 14.(월) 17:00 이후

ㅇ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라. 면접시험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ㅇ 일　　자: ‘23. 8. 18.(금)

ㅇ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

2) 심사방법

| 면접 평정요소 | 배 점 |
|---|---|
| ① 공적 책무성, 발달장애인복지관의 목적성 부합여부(20점)<br>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20점)<br>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br>④ 인성 및 직업관(20점)<br>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 100점 |

## 6. 채용일정

| 구　분 | 채용일정 |
|---|---|
| 공고 | ‘23. 7. 25.(화) ~ 8. 4.(금) |
| 원서접수 | ‘23. 7. 31.(월) ~ 8. 4.(금) 17:00 |
| 서류전형 | ‘23. 8. 7.(월)~ 8. 9.(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r>필기시험 장소 공고 | ‘23. 8. 9.(수) |
| 필기시험 | ‘23. 8. 11.(금) 10: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br>면접시험 장소 공고 | ‘23. 8. 14.(월) |
| 면접시험(인성·역량 면접) | ‘23. 8. 18.(금) |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8. 21.(월) |
| 임용 | ‘23. 9. 1.(금) |

※ 상기 일정은 사회서비스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

## 7. 제출서류

ㅇ 제출기간: ‘23. 7. 31.(월) ~ 8. 4.(금) 17:00 까지

ㅇ 제출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전자우편: jejupass1@jeju.pass.or.kr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응시자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서식1]<br>2. 자기소개서 [서식2]<br>3. 직무수행계획서[서식3]<br>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4]<br>5. 재직/경력 증명서(5급은 경력이 있을 시 제출)<br>(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br>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확인이 안될 경우 미인정)<br>7.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등본 미인정, 공고일 이후 발급)<br>* 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br>(초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br>*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 | 필수 |
| |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br>- 관련 자격증 사본<br>(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유(1급, 2급)한 자격 모두 제출) | 해당자 |
| |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br>- 장애인 증명서<br>-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 해당자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1. 인사기록카드<br>2. 가족관계증명서<br>3. 주민등록 등본<br>4.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br>5. 후견등기부사항 부존재증명서<br>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br>7.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동의서 | 최종합격 후 제출 (합격일 이후 발행) |

※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 1.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구분 | 면접 평정요소 | 합격자 결정 기준 | 비고 |
|---|---|---|---|
| 공통 사항 | ①공적 책무성, 발달장애인복지 관의 목적성 부합여부<br>②이해력 및 지식수준<br>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br>④인성 및 직업관<br>⑤창의성 및 전문성 |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br>【동점자 처리】<br>-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br>- 2순위: 장애인<br>-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br>-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br>(①→②→③→④→⑤) | |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2. 최종 합격자 통지

ㅇ 합격자 발표: ‘23. 8. 21.(월) 예정

ㅇ 통지방법: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 3. 임 용

ㅇ 임용예정일: ‘23. 9. 1.(금)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

## 9. 예비 합격자 제도

ㅇ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10.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 1. 이의신청 절차 안내

ㅇ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팀으로 제출

ㅇ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2. 채용서류 반환

ㅇ 운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ㅇ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팀으로 제출

ㅇ 반환방법: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제주사회서비스원 부담)

## 11.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제주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팀(070-4173-86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